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영동군의회규칙 제 호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영동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영동군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